

## 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1996. 6.  
제출자 : 이천시장

### □ 제안이유

- 지역의료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의료보험법에 의거하여 1988년부터 실시된 제도로서 주민등록을 근거로 하여 피보험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소득, 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이용하게 됨. 또한 피보험자 관리는 물론 관할 행정구역 읍·면·동사무소내 지역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제정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가. 지원사항 : 읍·면·동사무소내 지소설치 시설지원 및 지방세과세자료 제공 등(안 제2조).
- 나. 운영규정 제정등 :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규칙 제정(안 제3조).
- 다. 공부열람 : 읍·면·동사무소내 지역의료보험지소 근무자의 공부열람 편의제공(안 제4조).

## 이천시조례 제 1호

### 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읍·면·동 및 풍·리·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항) ①시장 및 읍·면·동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읍·면·동 사무소내에 의료보험조합지소(이하 "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등의 지원
2.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등의 제공
3.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취득·상실 신고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출입 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
4. 의료보호대상자의 변경, 군입대 및 전역, 출생·사망, 시설등의 수용 및 퇴소현황의 제공  
②풍·리·반장은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 피보험자의 자격확인업무등을 적극 지원한다.  
③시장 및 읍·면·동장은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지방세 과세자료가 보험료산정자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민의 소득금액 또는 재산가액의 조사방법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경유방법등은 시장 및 읍·면·동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규정제정등) ①시장은 읍·면·동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규칙으로 정한다.

1. 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임무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소집, 의결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3. 의결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읍·면·동장은 의료보험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상황을 수시 확인하는등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공부열람등) 읍·면·동장은 지소근무자가 의료보험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표, 과세대장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